

2026년도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 플랫폼 구축 사업』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 기업 모집 및 지원 계획 통합 공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는 부산의 뿌리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BIZ 플랫폼(제조서비스 플랫폼 + 공정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3월 25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I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6년도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 플랫폼 구축 사업」
현장 맞춤형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 통합공고
- 공고분야 : ① 디지털 모듈/시스템 제작 지원, ② 디지털 공정혁신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30
※ 프로그램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6. 3. 25(수) ~ 2026. 4. 24(금)
- 접수방법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www.kiro.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 기업으로, 금형·소성가공·정밀가공·표면처리 관련 분야의 제품·공정·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해당 분야 고도화 수요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인증서 보유 시 가점 부여 가능함

□ 주요사업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규모	비고
디지털 모듈/시스템 제작 지원	제조공정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데이터 수집장치, 디지털 모듈·장치·시스템의 제작 및 현장 적용 지원	200백만원	8개사	기업당 25백만원 내외
디지털 공정혁신 지원	노후 설비·공정의 부분 디지털화와 데이터 기반 공정개선·자동화·최적화 솔루션 적용 지원	195백만원	3개사	기업당 65백만원 내외
계		395백만원	11개사	-

※ 본 사업 추진시 기술인력 교육, 경영지원서비스 등 기타 기술지원이 있음
(본 사항은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 프로그램 중복지원 불가함
- 신청하는 기업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

① 디지털 모듈/시스템 제작 지원

- 선정방식 :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발표평가 실시)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8개사,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2,500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수반되는 부가세 및 관세 등 제세공과금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함
- 지원금 지급방식 :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 기업으로, 금형·소성가공·정밀가공·표면처리 관련 분야의 제품·공정·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해당 분야 고도화 수요기업
 -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인증서 보유 시 가점 부여 가능함
- 지원내용 : 현장 맞춤형 데이터 수집·공정개선을 위한 디지털 모듈·장치·시스템 제작 및 현장 적용 지원
 - 데이터 검출·수집을 위한 디지털 모듈/장비/시스템 지원
 - * 단,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가 아닌 양산 목적 설비 또는 단순 자동화 설비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 (예) 센서 부착 및 데이터 수집 등 개선을 통한 기보유 설비의 지능화
 - 데이터 분석·처리를 위한 HW/SW 지원
 - 뿌리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 지원(AI, IoT 등 지능화 기술적용)
 - ※ 본 사업 추진시 기술인력 교육, 경영지원서비스 등 기타 기술지원이 있음 (본 사항은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 항목

구분	예산과목명 설명
연구 재료비	재료·부품·모듈 구입비, 시제품 제작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시험평가·분석 수수료, 장비이용료,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기술컨설팅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사업비 집행 시 사업비 집행기준표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상기 예산과목 외 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은 집행 불가

○ 지원 결과물 : 지원 결과보고서

② 디지털 공정혁신 지원

- 선정방식 :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발표평가 실시)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3개사, 기업당 65,000천원 이내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6,500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수반되는 부가세 및 관세 등 제세공과금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함
- 지원금 지급방식 :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 기업으로, 금형·소성가공·정밀가공·표면처리 관련 분야의 제품·공정·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해당 분야 고도화 수요기업
 -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인증서 보유 시 가점 부여 가능함
- 지원내용 : 노후 설비·공정의 부분 디지털화와 데이터 기반 공정 개선·자동화·최적화 솔루션 적용 지원
 - 제조공정 로봇 시스템 적용 및 공정혁신용 시스템(기구부, 구동부, 센싱, 데이터 처리 등) 제작·설치 지원
 - 데이터 검출·수집을 위한 디지털 모듈·장비·시스템 지원
 - 데이터 분석·처리를 위한 HW/SW 및 데이터 활용 솔루션 지원
 - 데이터 기반 공정개선, 자동화·지능화, 최적화 솔루션 적용 및 테스트 지원
 - 뿌리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 지원(AI, IoT 등 지능화 기술적용)
 - * 단,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가 아닌 양산 목적 설비 또는 단순 자동화 설비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 (예) 센서 부착 및 데이터 수집 등 개선을 통한 기보유 설비의 지능화
- ※ 본 사업 추진시 기술인력 교육, 경영지원서비스 등 기타 기술지원이 있음
(본 사항은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 항목

구분	예산과목명 설명
연구 재료비	재료·부품·모듈 구입비, 시제품 제작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시험평가·분석 수수료, 장비이용료,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기술컨설팅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사업비 집행 시 사업비 집행기준표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상기 예산과목 외 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은 집행 불가

○ 지원 결과물 : 지원 결과보고서

Ⅲ

평가절차

□ 평가절차

○ 평가단계 : ① 신청자격 사전검토 → ② 참여기업 선정평가

- 신청자격 사전검토 :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외대상 해당 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참여기업 선정평가 : 추진과제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기업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식은 지원분야별 기준에 따름

○ 평가기준

- 디지털 모듈/시스템 제작 지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지원 필요성	과제 필요성(15)	40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25)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20)	4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20)	
기대효과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10)	20
	사업화 및 성과창출 가능성(10)	
합 계		100
가점	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취득 기업 (※ 인증서 모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	5

※ 발표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디지털 공정혁신 지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지원 필요성	과제 필요성(15)	40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25)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20)	4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20)	
기대효과	공정개선 및 현장 활용 가능성(10)	20
	사업화 및 성과창출 가능성(10)	
합 계		100
가점	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취득 기업 (※ 인증서 모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	5

※ 발표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 기업 선정
 - ※ 프로그램 별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평가기준 확인 필요
 -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공고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 ※ 과제 총괄책임자 직접발표를 원칙으로 함
 - ※ 부득이한 경우, 평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
 - ※ 이 외 발표자의 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 선정기준 :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함
 - ※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 ※ 70점 이상 과제라도 해당 분야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함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운영 : 제안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사업비 확정 : 평가 완료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 사업비를 확정함

IV

추진일정

□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①	사업 공고	<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3.25.~ 4.24	한국로봇융합연구원 (KIRO) 홈페이지
↓				
②	신청 접수	< 사업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 • 2026. 04. 24(금), 18시까지	3.25.~ 4.24	이메일 신청 신청기업→KIRO
↓				
③	평가	< 발표평가 > •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발표평가 평가 대상은 신청접수후 통보 • 심의를 통한 사업비 확정	5월 초	평가위원회
↓				
④	최종 선정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안내 >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내용보완	5월 중	KIRO→선정기업
↓				
⑤	협약 체결	< 협약체결 > •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5월 중	KIRO↔선정기업
↓				
⑥	중간 점검	< 중간점검 > • 과제 진행상황 검토 및 향후 일정 공유	8월 말	KIRO→선정기업
↓				
⑦	결과 평가	<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 • 최종 과제 수행 실적 결과 제출 • 지원 과제별 결과 발표평가 실시	협약 종료후	선정기업→KIRO
↓				
⑧	사후 관리	< 사후관리 > • 선정기업별 성과관리(매출 및 고용 등)	상시	KIRO→선정기업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표평가 대상자 및 일정은 추후 통보

V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전체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직인 날인 필수)
 - 메일제목 : (기업명)_프로그램명, [예시 : (한국로봇융합연구원)_디지털 공정혁신 지원]
 -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제출기한 : 2026. 4. 24(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 서류 누락 또는 마감기한 후 제출 시 접수 불가
 - 접수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접수처 이메일 수신시간 기준)
- 제출처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김현진 선임 연구원
 - 연락처 : 051-623-1573 / 이메일 : hjkim@kiro.re.kr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양식 제공	비 고
1	지원신청서	○	공통사항 필수
2	신청기업 참여의사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3	사업참여의사 확인서	○	
4	신청기업 협약서	○	
5	사업자등록증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X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X	
7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X	
8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X	
9	최근 3개년(2023~2025) 재무제표	X	
10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	X	선택사항 (미제출시 가점반영 없음)

-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 : 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취득 기업(인증서 모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공급기관, 기관별 각 대표자, 사업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공급기관, 기관별 각 대표자, 사업총괄책임자)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공급기관, 기관별 각 대표자, 사업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 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공고 내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63411
2	무도유흥주점업	634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유의사항

- 사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무효처리하며,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일정한 성과활용기간 내 사업성과에 대한 추적 조사 대상사업이므로 반드시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기간 : 사업종료 후 5년
 - 사업성과지표 : 매출증가액(백만원), 신규고용(명), 기업만족도(%)
(기업만족도 조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진행)

- 응모자가 없거나 평가 결과 적격기업이 없는 경우 재공고(연장) 가능함.
-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함. 협약 미체결 또는 선정 포기 발생 시 차순위 기업과 협약 가능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함.
-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공고내용 부적합 등의 경우 접수 불가 또는 평가대상 제외 가능함.
- 선정 이후라도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중대한 누락, 신청자격 미충족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가능함.
- 선정기업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수행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또는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점검을 통해 지원 중단,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 기준 및 안내자료를 따름.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기업지원금 집행 시 부가세 발생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부가세는 선정기업 부담으로 함
- 평가일정 및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안내 가능함.

첨부**뿌리산업 범위**

- 근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 지원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중 금형 산업, 소성가공 산업, 표면처리 산업, 정밀가공 산업 분야에 한함

1.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 소성가공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3.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4.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